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차보전)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2. 14.

충주시장

1. 신규 대출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업무협약 금융회사 :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충주시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

3. 지원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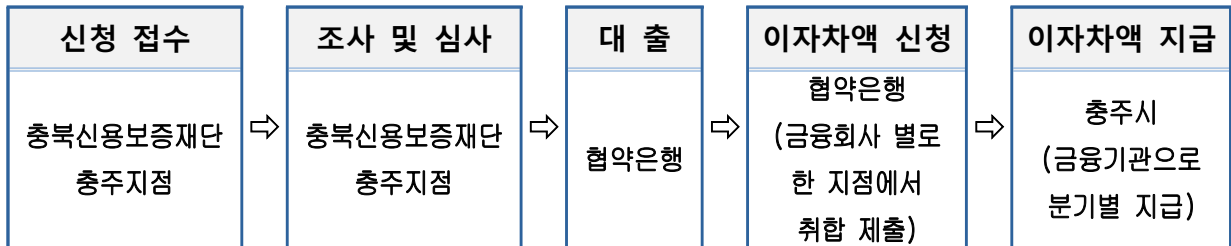
-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4.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 지원한도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 기본 지원이자 2%이나 코로나19로 인해 1% 추가지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융자상환 : 3년 이내 (일시상환)

5. 지원신청 시기·절차

- 접수시기 : 연중 내내 (대출규모 달성 시 까지)
- 지원절차



6. 이자비용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7. 문의처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 기타 문의 :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2)